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1-9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3월 일
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

2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시행 2020. 4. 8.)이 개정되어
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,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
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민간용도 확대 정비(안 제3조제9호)
- 강서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「자연재해대책
법」 등 재난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의 시설 안전
조치의 경우 용도 추가
 -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·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안
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의 안전조치 사항
- 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규정 항목 중 근거법령
개정에 따른 수정 (안 제3조제1호)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)」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이관 됨에 따른 내용 수정

다. 관련근거 수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~42조」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」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」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 12. 16. ~ 2021. 1. 5.) 결과 : 의견 없음
- 2) 규제 사전심사 결과 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”를 “제67조”로, “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재난관리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금”을 “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에 따른
적립금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따른 사항과”를 “따라”로, “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”를 “용도에 사용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예방활동의”를 “관리활동의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기본법 시행령 제32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)제2항”을 “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”로 하고,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“기본법 제31조”를 “법 제31조”로, “긴급안전조치”를 “안전조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법 제3조제1호다목”을 “법 제3조제1호나목”으로 하

고,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·보강

8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

9.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

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
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·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
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

10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제2항 중 “15이상”을 “15 이상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영 제74조제1호마목”을 “제3조제8호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 2항”을 “제2항”으로,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위원수”를 “위원 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강서구”를 “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강서구의회 의장이”를 “구 의회가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<u>재난관리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<u>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</u></p> <p>2. <u>기금의 운용 수익금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제74조에 <u>따른 사항과</u> 다음 각 호의 <u>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u></p> <p>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<u>예방활동의</u> 다음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제67조</u>----- ----- ----- <u>재난관리기금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에 따른 <u>적립금</u></p> <p>2. <u>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<u>용도에 사용한다.</u></p> <p>1. ----- ----- <u>관리활동의</u> -----</p>

각 목

가. (생략)

나. 기본법 시행령 제32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)제2항에 따른 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)의 안전진단 및 보수·보강사업

다. ~ 자. (생략)

<신설>

차. (생략)

2. (생략)

3. 재난피해시설(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의 다음 각 목

가. ~ 다. (생략)

라. 기본법 제31조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)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-----

다. ~ 자. (현행과 같음)

차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 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·보강

카. (현행 차목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법 제31조-----
----- 안전조치-----

4.·5. (생략)

6.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
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
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
응급복구

7. (생략)

8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
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사업

<신 설>

4.·5. (현행과 같음)

6. 법 제3조제1호나목

7. (현행과 같음)

8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
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
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
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
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

9.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
라 한다) 외의 자가 소유하거
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안전조치

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
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
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
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
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
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
위치한 시설일 것

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
부재나 주소·거소가 불

<신 설>
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을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고,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5조(기금의 용자 등) ① 영 제74

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
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

10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15 이상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기금의 용자 등) ① 제3조

조제1호마목에 따라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등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용자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~

③ (생략)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, 제 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, 특정 성(남성 또는 여성)이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재난 및 기금 운용에 관련 있는 강서구 소관 부서의 장

2. (생략)

3.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

⑤ ~ ⑦ (생략)

제11조(준용) ① 삭 제

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의한다.

제8호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~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제2항-----

----- 1 이상 -----

-----.

----- 위원 수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구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구의회가 -----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준용)

<삭 제>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제3조 제1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

4. 작성자 : 안전관리과 이수찬

(담당 : 방재안전7급 이수찬 / ☎ 2600-6807)

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시행 2020. 4. 8.)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,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민간용도 확대 정비(안 제3조제9호)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규정 항목 중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(안 제3조제1호)
- 관련근거 수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5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민간용도로 사용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평가번호	2020 - 52				
자치법규명	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급	행정7급	성명	김태환
입안주무부서	안전관리과	통보(조치)일		2020. 12. 31.	
관련조문		검토결과		조치사항	
개정안 전부		원안 동의		-	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~42조」

제40조(대피명령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·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9. 12. 3.>

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>
[전문개정 2010. 6. 8.]

제41조(위험구역의 설정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,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
2.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3. 8. 6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제42조(강제대피조치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·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9. 12. 3.>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」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가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

나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. 다만,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.

2.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

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
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·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
나.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」

제7조(시설물의 종류)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종시설물: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

가. 고속철도 교량,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

나.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,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

다.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

라. 다목적댐, 발전용댐,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

마.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
바. 하구둑,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

사. 광역상수도, 공업용수도,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

2. 제2종시설물: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

가.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

나. 고속국도, 일반국도,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

다.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

라.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

마.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
바.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

사.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

3. 제3종시설물: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시설물
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」

제55조(방재시설) 법 제6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4. 7. 14., 2014. 7. 16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7. 28.>

1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·호안·보 및 수문
2. 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·하구둑·제방·호안·수제·보·감문·수문·수로터널·운하 및 관측시설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
4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
5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, 양수장,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, 배수장, 취입보(取入洑), 용수로, 배수로, 유지, 방조제 및 제방
6.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
7.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댐
8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·제설시설, 토사유출·낙석 방지 시설, 공동구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·교량·지하도 및 육교
9.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 시설
10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가목2)에 따른 방파제·방사제·파제제 및 호안
11.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제5호가목1)에 따른 방파제·방사제·파제제
12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
[전문개정 2012. 8. 22.]